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8179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9. 14.

판 결 선 고 2022. 10. 2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가소11856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24,522원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2022.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24,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6. 피고 C과, 채권자 피고 B, 채무자 원고, 차용금액 3억 원, 이자 매월 600만 원(매월 16일 지급), 변제기 2019. 5. 16.(단, 6개월 연장 가능)로 정하여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위 차용금액 3억 원에서 선이자 1,800만 원 및 수수료 800만 원을 공제한 2억 7,4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의 계좌로 ① 2019. 2. 16. 600만 원, ② 2019. 3. 16. 600만 원, ③ 2019. 4. 16. 600만 원, ④ 2019. 5. 16. 300만 원 ⑤ 2019. 5. 31. 300만 원, ⑥ 2019. 6. 16. 300만 원, ⑦ 2019. 6. 30. 300만 원, ⑧ 2019. 7. 17. 100만 원, ⑨ 2019. 7. 23. 100만 원, ⑩ 2019. 7. 26. 314,980,000원 등 합계 346,9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21.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11. 16.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2020고정507),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부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로서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26,224,5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 1)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은 피고 C이고, 피고 B은 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 2) 피고 C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5.6%로 정하여 차용한 후 이를 원고에게 대여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의 이자율에서 위 이자율 15.6%를 공제하면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다.
- 3)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변제일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C은 E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E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C이 E에게 E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위약금, 법적비용 등을 더하여 합계 2억 6,253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14,645,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C은 위 약정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대여 및 이자 수령의 주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람은 피고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1) ① D의 직원인 F는 금전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금전을 빌려줄 사람으로 D의 고객인 피고들을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원고는 2018. 11. 14.경 피고들을 처음 만났다.

② 원고는 그 이틀 뒤인 2018. 11. 16. 피고 C을 만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차용금 증서에는 채권자가 피고 B으로 기재되었고, 채권자의 계좌번호 역시 피고 B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었다. 한편

같은 날 법무법인 G 증서 2018년 제191호로 작성된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9. 5. 16.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도 수취인은 피고 B으로 기재되었고, 같은 날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외 1필지 I아파트 J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③ 피고 B은 2018. 11. 16. D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5.6%, 변제기 2020. 11.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그 담보로서 피고들이 거주하는 피고 B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K 외 4필지 L아파트 M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④ 원고는 2018. 11. 16. 피고 B의 계좌로부터 차용금액 3억 원에서 선이자 1,800만 원 및 수수료 800만 원을 공제한 2억 7,4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돈은 같은 날 피고 B이 D로부터 차용한 위 3억 5,000만 원의 일부이다.

⑤ 원고는 2019. 2. 16.부터 2019. 7. 26.까지 피고 B의 계좌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⑥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가 피고들을 소개받게 된 이유와 경위, 피고 B과 D 사이의 대부거래와 그 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피고들의 주거지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송금된 금전의 출처, 피고 B과 D 사이의 대부거래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거래의 규모,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거래에 이용된 계좌,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반환할 이자의 범위

1)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한편,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한 3억 원에서 피고들이 3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1,800만 원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800만 원을 뺀 나머지 2억 7,400만 원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2018. 11. 16.부터 2019. 2. 15.까지 3개월분의 이자는 16,575,123원(= 274,000,000원 × 0.24 × 92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9,424,877원(= 26,000,000원 - 16,575,123원)은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원금인 300,000,000원에 충당되고, 따라서 2019. 2. 16.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유효한 원금은 290,575,123원(= 300,000,000원 - 9,424,877원)이 되며, 여기에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각 변제액을 이자와 원금 순서로 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7. 26. 기준 원고의 잔존 원금은 283,789,119원이고, 잔존 이자는 4,847,300원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26,334,581원(= 314,980,000원 - 283,798,119원 - 4,847,300원)의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제 일	변제액	원금	시작 일	종료 일	발생 이자	이자 누적액	이자 총당	원금 총당	원금 잔액	이자 잔액
2019. 2. 16.	6,000,000	290,575,123	2019. 2. 16.	2019. 2. 16.	191,063	191,063	191,063	5,808,937	284,766,186	0
2019. 3. 16.	6,000,000	284,766,186	2019. 2. 17.	2019. 3. 16.	5,242,818	5,242,818	5,242,818	757,182	284,009,004	0
2019. 4. 16.	6,000,000	284,009,004	2019. 3. 17.	2019. 4. 16.	5,789,115	5,789,115	5,789,115	210,885	283,798,119	0
2019. 5. 16.	3,000,000	283,798,119	2019. 4. 17.	2019. 5. 16.	5,598,209	5,598,209	3,000,000	0	283,798,119	2,598,209
2019. 5. 31.	3,000,000	283,798,119	2019. 5. 17.	2019. 5. 31.	2,799,104	5,397,313	3,000,000	0	283,798,119	2,397,313
2019. 6. 16.	3,000,000	283,798,119	2019. 6. 1.	2019. 6. 16.	2,985,711	5,383,024	3,000,000	0	283,798,119	2,383,024

2019. 6. 30.	3,000,000	283,798,119	2019. 6. 17.	2019. 6. 30.	2,612,497	4,995,521	3,000,000	0	283,798,119	1,995,521
2019. 7. 17.	1,000,000	283,798,119	2019. 7. 1.	2019. 7. 17.	3,172,318	5,167,839	1,000,000	0	283,798,119	4,167,839
2019. 7. 23.	1,000,000	283,798,119	2019. 7. 18.	2019. 7. 23.	1,119,641	5,287,480	1,000,000	0	283,798,119	4,287,480
2019. 7. 26.	314,980,000	283,798,119	2019. 7. 24.	2019. 7. 26.	559,820	4,847,300	4,847,300	283,798,119	0	0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6,334,5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7. 2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체책임만 인정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채권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금전대차를 위하여 제3자에게 별도의 이자나 비용 등을 지불하였는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들이 아니라 N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14,64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추가로 원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참조),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김수경, 판사 김우현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이자제한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